- 당사의 누적결손인 자회사의 채권 약 10억워을 자회사의 자본금으로 전화이 가능한 지 확인하고자 합니다
- 1. 대여금이 아닌 미상환한 채권도 출자 전환이 가능한 지
- 2. 100% 지분 가진 자회사의 경우 자회사의 채무면제의 어떻게 계산하는 지 (자회사의 누적 결손액 100억, 출자 전환 예정 채권 10억)
- 3. 자회사의 누적 결손으로 인한 채무출자전환도 부당했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지 여 부
- 1. 채권도 출자전환이 가능합니다.
- 2. 자회사 입장에서 해당 채궈액만큼 주식발행하여 자본금으로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.
- 3. 채권의 주식전환시 시가로 반영해야 하며, 당연히 시가로 반영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 용됩니다.

주주 배당시 배당조건 문의입니다

- 1. 주주배당시, 미처분결손금이 있을때 배당이 되는지요?
- 2. 주주배당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고,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을때는 배당조건이 되는지요

배당은 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, 상법에 규정된 배다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결정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. 상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● 상법 제462조(이익의 배당)

-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 을 할 수 있다.
- 1. 자본금의 액
- 2.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
- 3.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
- 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

보 자 코

초

www.eAnSe.com 5 $2021 \cdot 01 \cdot 13$

관부가세 인도조건 및 결제방법에 따른 부가세 불공제 구분

- 1. 수입시 인도조건이 DDP 일 때 수춬자가 모든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한다고 들었습니 다. 그러면 이 때 수출자가 부가세를 대납하여 수입자가 세금계산서만 받고 부가세 에 대해 세관이나 수출자에게 전혀 지급한 내역이 없다면, 이 부가세에 대해서는 불 공제인가요?
 - 2. 인도조건이 FOB 이고 결제방법이 GN으로 무상거래인데, 수출자가 통관비용까지 모 두 부담하여, 수입자가 세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는 받았으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고 합니다. 이 때의 부가세는 공제 받을 수 있나요?

1. 수입시 수출자가 부가가치세 부담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세금계산서 수취하였더라도 자기가 부담한 세 액이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♣ 서삼-1670. 2006.08.02

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(국내사업자)의 책임과 계산 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.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 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써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

2. 미찬가지로 수입자가 세관통관시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 습니다.

용역의 성격에 따른 영세윸 적용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

당사는 해외에서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 채권(미수금)을 회수하기 위해 국내 법인A사에 채권 회수 및 수금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.

이러한 경우 당사와 국내 법인A사의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나요? 아니면 일반 용역계약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가요?

채권회수 및 수금업무 대행용역은 부가기치세 영세율대상이 아니며 과세대상입니다.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.

6 안세재경저널 · 공인회계사조세저널 (구독신청 · 세무상담 829-7575)

2021 · 01 · 13